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3719호 |
|----------|--------|

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| 2025년 11월 17일 | 김포시장 |
| 나. 회 부 일 자 : | 2025년 12월 1일 | |
| 다. 상 정 일 자 : | 2025년 12월 15일 | |
| 라. 의 결 일 자 : | 2025년 12월 15일 | |

2. 제안이유

- 전용사용에 국한된 우선순위를 연습사용에도 적용하여 사용허가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고,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조문을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전용사용허가 우선순위 조문 제목 정비(안 제6조).
- 나.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(안 제12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